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최정순, 최기찬, 문장길,
김상진, 송정빈, 김제리, 김생환,
이광성, 김광수, 송명화, 김경영,
유 용, 김화숙, 장상기, 이영실,
문병훈, 권영희 의원 (18명)

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

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(안 제9조제1항제1호, 안 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후단 중 “민주유공자, 다둥이”를 “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다둥이”로 한다.

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민주유공자, 「국민기초생활”을 각각 “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조제4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.</p> <p>1. 12세 이하인 자, 65세 이상인 자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, <u>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</u>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</p>	<p>제9조(입장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다둥이 -----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/p>

· 18민주유공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

나. 삭 제

다. ~ 마. (생 략)

3. (생 략)

4.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
분의 30 감액

가. ~ 다. (생 략)

<신 설>

라. · 마. (생 략)

---민주유공자, 「의사상
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
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
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--

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
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
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

마. · 바. (현행 라목 및 마목
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료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50%감액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 시 전용사용료의 30%감액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함 (안 제9조제3항제1호, 제10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및 제4호라목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

나. 추계결과

- 총비용 ≙ 410,825천원(연 평균 82,165천원)

(단위: 천원)

구 분	내용 및 조항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 감소	의사상자 등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자 추가 (제9조제3항제1호, 제10조제1호 가목, 제2호 가목, 제4호 라목)	82,165	82,165	82,165	82,165	82,165	410,825

다. 비용추계 전제

- 1) 의사상자는 2019년 1월 현재 서울시 거주 146명(의사자 85, 의상자 61)이고, 향후 인원 증감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
 - 의사자 유족은 선순위자가 모두 배우자이고, 그 자녀들은 2명으로 가정
 -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모두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,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활동보조자 1명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정

-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3명이며, 의상자와 별도로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
- 2) 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의사상자 1인 당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횟수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며 향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- 3)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는 시설별, 프로그램별로 가격이 상이하므로, 평균가로 산정
- 4)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는 연 1회,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것으로 가정
- 5) 계산액의 천원 미만 절사

※ 1인당 시립체육시설 입장료, 사용료, 수강료 감면액 산정

구분	이용시설	이용기준 등	평균금액	연간 이용횟수	감면액(원) (50%)
시설 관람(입장료)	서울월드컵경기장	성인	1,000	1	500
개인연습(사용료)	체육관, 야구장, 풋살장, 승마장 등 18개 시설	성인, 1일 2시간	8,800	10	44,000
생활체육프로그램 (수강료)	수영, 헬스, 골프 등 12개 프로그램	성인, 월 8회	68,000	3	102,000
합계					146,500

라. 비용추계 산식

○ 비용추계 합계액 ≒ 82,165천원

- 의사상자 등 1인당 연간 시립체육시설 이용 감면액 ≒ 82,039천원

· 의사자 유족(85명×3명) × 1인 당 감면액(146,500원) ≒ 37,357천원

· 의상자 수(61명×2명) × 1인 당 감면액(146,500원) ≒ 17,873천원

· 의상자 가족(61명×3명) × 1인 당 감면액(146,500원) ≒ 26,809천원

- 의사상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시 전용사용료 감면액 ≒ 126천원

· 잠실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(420,000원) × 감면율(30%) × 연간 행사횟수(1회) ≒ 126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 담당관 남승우
 예산분석팀장 정한섭
 분석관(주무관) 박인근

☎ 02-2180-7934

e-mail : yab0217@seoul.go.kr